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규범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박윤진 주임 (연수과)

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개념

미국 Georgia대학의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

○ 기업의 경제적 책임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

○ 기업의 법적 책임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

○ 기업의 윤리적 책임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

○ 기업의 자선적 책임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의미

II. CSR 국제적 논의 동향

1. 정부간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1) UN

○ 유엔은 오래전부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규범을 제

정해 왔으며 이를 CSR 확산 노력으로 승계하고 있음.

○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The Global Compact'를 구체화하여 2000년 7월에 공식 출범

○ 'The Global Compact'란 기업들이 UN의 핵심기관, 노동계 및 시민 사회들과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영역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국제적으로 동참하자는 것임.

○ 현재 'The Global Compact'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없음.

(2) OECD

○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OECD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 및 국제거래관계에서 외국 공무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통하여 CSR을 강조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기업, 노동조합 및 NGO에게 CSR에 대한 확고한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고용, 환경, 반부패, 소비자이익, 과학기술, 세제 및 경쟁 등 8개 분야를 포괄하여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를 권고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OECD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주주의 권한, 주주의 동등한 대우, 기업 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인의 역할, 정보공개와 투명성, 이사회와 임원의 책임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제거래관계에서 외국공무원의 부패적결에 대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통하여 모든 국가는 각 국내에 있는 기업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제공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2. ISO의 국제표준화 동향

(1) 표준화 추진배경

- 규범화와 표준화의 관계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국가적 접근방식의 주류는 규범화를 통한 방식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규범화의 범주는 관심영역에 따라 인권, 환경, 반부패 등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상기 특정 분야의 책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범화를 의미
- 표준화 추진 배경
 - ISO는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CSR을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멕시코 등은 이미 자국의 SR 표준을 제정하였고, 캐나다는 CSR인증제도를 실시 중
 - 미국윤리임원협의회는 2003년 미국표준협회에게 ISO차원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도록 요청

(2) ISO SR 표준가이드라인(ISO 26000)의 기본체제(안)

- ISO SR 표준은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에 관한 개념 논의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성방법에 관한 것임
- 기본체제(안)
 1. 범위
 2. 규범적 참조
 3. 용어 및 정의
 4. 기본원칙
 -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문화 및 경제적 차이점 등을 존중
 - 투명·공정하고, 책임감·신뢰감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신뢰와 만족을 통한 지속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존중
 5. 기본체제
 - 조직의 비전, 목적, 가치, 정책, 전략 및 SR이행간의 관계
 - SR 범위, 정책 및 의무, 목적, 조직관리, 자원배분, 권한 및 의무, 규제의 기본체제, 의사소통
 6. 조직내 SR관리
 - 예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SR문제 규명, 분석 및 평가, 이행, 성과, 이행감시, 유지 및 개선
 7. SR커뮤니케이션

(3) ISO SR 표준가이드라인(ISO 26000)의 영향

- ISO는 비정부간 국제표준화기구로서 동 기구가 제정한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으나, 동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적으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이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됨.



- 예컨대,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SO 9000 (품질경영)표준의 경우, EU가 공산품에 대한 CE마크(역내 강제검사제도)에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체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ISO 9000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함에 따라 EU내 수입상들이 ISO 9000 인증서를 요구하게 되어 동 인증이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현재 ISO SR의 표준화 논의는 초보적 단계로 2008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차원의 국가규격 또는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있고, 이미 일부국가에서는 인증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어 무역상 기술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III. 주요 국가별 CSR 대응동향

- 미국
 -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기업전통속에서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국내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를 통해 CSR관련 규율을 강화
 - 뉴욕증시 상장시 외국기업들에게도 윤리경영을 의무화
 - 해외부패방지법, Peer Pressure 형태의 윤리경영 시스템 운용,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부정청구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중임.
- EU
 - 주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CSR 확산에 중점
 - OECD 등 국제기구의 CSR 확산에 매우 적극적으로

로 활동하고 있으며, CSR 정착을 위한 전략으로 'EU action framework for CSR'과 'Principles for Community Action'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아시아

-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황이나 최근 우리나라, 일본 등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공직윤리, 준법경영, 윤리경영 등에 대한 CSR 확산 및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
- 일본의 경우 IS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CSR일본규격을 제정 중에 있음.

IV. 우리나라의 CSR 대응동향

○ 국내기업의 CSR 현황

- 우리기업의 전반적인 CSR 수준은 초기단계이나 최근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공헌 기반 조성 등에서 개선이 두드러짐.

○ CSR 대응방향

- 정부는 ISO SR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내 'CSR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제 CSR 규범화 및 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SR 가이드라인(ISO 26000) 개발 과정에서 SR 표준화 포럼을 통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표준가이드라인 국내 보급을 강화할 예정